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331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9. 9. 24. 접수 제113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4%(변동금리), 지연배상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되, 2년 거치 이후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3. 소외 회사에 1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98%(변동금리), 지연배상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되, 2년 거치 이후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소외 회사 대표 C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5. 28.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2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 원금 282,880,000원, 이자 3,821,174원, 연체이자 2,170,2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2019. 3.부터 2019. 8. 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는 2019. 9.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13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이던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매매계약의 체결시기, C, 소회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이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는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자동차 등 수중에 소지하고 있었던 돈으로 매매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별지

목록

충청남도 서천군 전 188㎡

